

16.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
 17. 법 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
 - 17의2.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
 - 17의3.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
 - 17의4. 법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
 - 17의5.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,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
 18.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통지의 수령
 19. 삭제 <2015. 12. 30.>
 20. 협회의 설립인가
 21. 법 제54조에 따른 협회사업의 지도 · 감독
 22.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(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나 효력의 정지에 필요한 자료만 해당한다)
 23.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
- [전문개정 2010. 11. 24.]

제15조(권한의 위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권한을 협회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.

<신설 2024. 12. 17.>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. <개정 2024. 12. 17.>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경영 지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연합회에 위탁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20. 12. 31., 2024. 12. 17.>

1.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활동

2. 과적(過積) 운행, 과로 운전, 과속 운전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 · 계몽

3.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 건의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. <개정 2011. 12. 13., 2013. 3. 23., 2013. 6. 11., 2018. 7. 3., 2019. 6. 25., 2020. 6. 16., 2024. 12. 17.>

1.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 · 운영

2.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

2의2.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론 및 실기 교육

3.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 · 관리 및 교육

4.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

4의2.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

5.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제공요청 및 기록 · 관리

6.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제공

7.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채용 기록 · 관리 자료의 요청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의15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·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.

<신설 2019. 6. 25., 2024. 12. 17., 2025. 10. 28.>

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그 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12. 13., 2013. 3. 23., 2024. 12. 17.>